

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2월 11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23일 포항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24일
- 다. 상정일자

○ 제311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(2023. 12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)

가. 개정이유

- 국가 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사업 추진,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업무량 급증 분야에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,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조정 : 변동없음

○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(안 별표3)

- 일반직 계	:	2,256명	→	2,253명	(△3)
2급	:	1명	→	1명	(변동없음)
3·4급	:	1명	→	1명	(변동없음)
4급	:	14명	→	14명	(변동없음)
5급	:	104명	→	104명	(변동없음)
6급이하	:	2,136명	→	2,133명	(△3)
- 연구직 계	:	9명	→	12명	(+3)
연구관	:	-	→	-	(변동없음)
연구사	:	9명	→	12명	(+3)

다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(정원의 관리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(정원의 규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인력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, 신규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신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명 감원하고,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업무 수행에 필요하는 연구직 공무원인 학예연구사를 3명 증원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